

의안 번호	1978	울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9. 2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9. 2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9. 16.(금)

2. 제안이유

- 구청장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 의지와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관리체계(안 제4조)
- 나. 공약사항의 확정(안 제5조)
 - 취임한 날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 확정
- 다. 실천계획의 수립(안 제6조)
 - 공약사항 실천 가능여부 검토 및 실천계획 수립
- 라.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(안 제8조)
 - 주관부서장 매년 초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

마.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회(안 제9조 ~ 10조)

- 주관부서장 추진실적 수시점검
- 총괄부서장 반기별 자체평가 실시 후 공개
- 연 1회 이상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

바.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(안 제11조)

- 단장1명, 부단장 1명 포함 25명 이내 구성
- 공개모집하여 추천한 후 구청장 위촉

사. 평가단 운영(안 제15조)

- 매년 1회 회의 실시,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연 1회만 추가 실시 가능
- 과반수 출석 개의,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 의결

아. 공개(안 제19조)

- 공약사업 확정, 실천계획, 수정 및 변경, 추진상황 및 결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

4. 근거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 및 제28조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구청장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 의지와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근거법규

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
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
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
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
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
자. 공유재산(公有財産) 관리

차. 주민등록 관리

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- 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- 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- 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